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16.

발 의 자 : 박균택 · 정준호 · 양부남
박정현 · 박 정 · 정일영
한민수 · 김동아 · 황명선
한준호 · 권철승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고병원성 호흡기 감염병,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이 상시화 되면서,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마스크 · 손소독제 · 의약품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특사경에게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7호).

또한,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담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「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

한 법률」이 2023. 10. 31. 제정되고 2025. 11. 1. 시행됨에 따라,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(안 제6조제7호의3 등).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3.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담배의 유해성 관리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

제6조제7호 중 “·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”을 “·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·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의2 전단 중 “제외한다)”를 “제외한다)와 그 취급의 상대방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3. 제5조제9호의3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「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범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	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9의2. (생략)	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9의3. <u>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담배의 유해성 관리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 공무원</u>
10. ~ 53. (생략)	10. ~ 5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관할)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	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관할) --- ----- -----

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「약사법」·「화장품법」·「의료기기법」·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·「위생용품 관리법」·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에 규정된 범죄와 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중 약사(藥事)에 관한 범죄

7의2. 제5조제9호의2에 규정된
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
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「마
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
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
(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
따른 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)
에 관하여 「마약류 관리에
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범죄.
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----- . 「체외진단
의료기기법」 . 「공중보건 위
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
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
법」 -----

7의2. -----

제외한다)
와 그 취급의 상대방-----

-----.

사,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, 범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. <u><신 설></u> 8. ~ 50.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<u>7의3. 제5조제9호의3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「담 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 률」에 규정된 범죄</u> 8. ~ 50. (현행과 같음)
--	--